
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·확산사업 공모안내서

2023. 9.

< 목 차 >

I . 사업 개요	1
1. 사업 목적	1
2. 사업 내용	1
3. 추진 일정	2
4. 사업 추진체계	3
II . 제안 안내	5
1. 접수 안내	5
2. 공동수급(컨소시엄) 관련	6
3. 유의 사항	6
III . 사업 선정방안	9
1. 평가 공통사항	9
2. '집중·확산(자유)' 선정 평가	9
3. '확산(상호운용)' 선정 평가	13
IV .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	16
1. 협약 안내	16
2. 사업 추진	17
3. 사업 평가	20
4.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	22
5. 기타 안내 사항	25

1. 사업 목적

- (자유)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
- (상호운용)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'간편하게 개발·이용'하고, '상호운용'이 가능한 '민간 블록체인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' 발굴

2. 사업 내용

- (사업명)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·확산사업
- (사업기간) 협약일 ~ 2024. 12. 20.
* 사업제안 시 협약체결일은 2024년 2월 21일(10개월)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, 향후 **협약체결일 확정**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
- (지원규모) 총 100억원 (8개 사업)

구분	공모주제	사업당 지원금	사업 수
집중사업	자유	30억원	1개
확산사업		10억원	6개
확산사업	상호운용	10억원	1개

※ '24.1월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음

- (지원방식) 상호출자(매칭펀드) 방식

※ 기술료는 해당사항이 없음(단,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·참여기업에게 사업 수행결과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)

< 매칭 금액 >

o (예시) 정부지원금이 30억 원인 경우

구분	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경우
총사업비 (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)	4,000,000,000원 이상	4,290,000,000원 이상	6,000,000,000원 이상
민간 부담금	1,000,000,000원 이상	1,290,000,000원 이상	3,000,000,000원 이상
민간부담금 中 현금	100,000,000원 이상	167,000,000원 이상	450,000,000원 이상

o (예시) 정부지원금이 10억 원인 경우

구분	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경우
총사업비 (정부지원금 + 민간부담금)	1,333,333,000원 이상	1,430,000,000원 이상	2,000,000,000원 이상
민간부담금	333,333,000원 이상	430,000,000원 이상	1,000,000,000원 이상
민간부담금 中 현금	33,333,300원 이상	55,900,000원 이상	150,000,000원 이상

※ [별첨] 2024년 민간분야 매칭펀드 관련 자기부담금 계산파일 참고

○ (공모주제) 자유 및 상호운용

※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'가상자산'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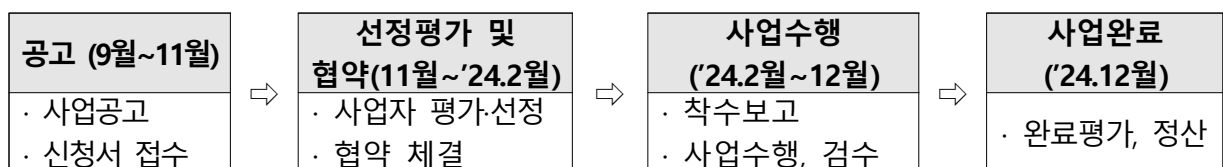
- (자유)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전 분야
- (상호운용) 공동플랫폼(DID 1종, NFT 1종) 및 디지털지갑 서비스(1종)에 한함

○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자격 및 조건 등 확인 후 지원

※ 공고문 및 공모안내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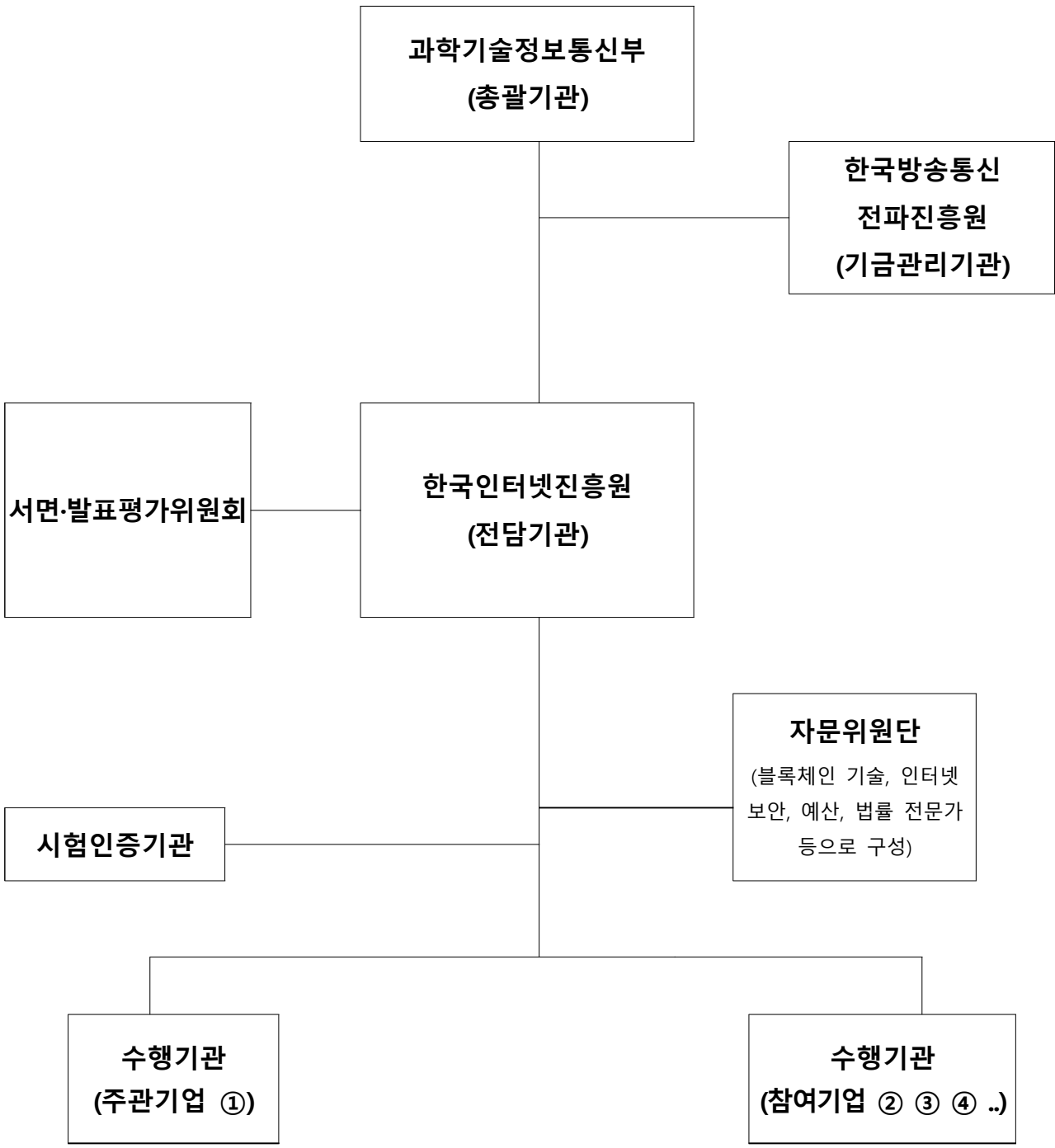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, 상호출자비용, 사업구성, 공동수급, 참여율, 블록체인기술 활용여부, 예산편성방법, 사업중복여부 등
- 제안사업은 블록체인(퍼블릭, 프라이빗, 분산앱, 스마트컨트랙트, DID 등) 기술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

3. 추진 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사업 추진체계



○ 기관·기업별 역할

구 분	주 요 업 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	○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○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(기금관리기관)	○ 기금관리, 배정 및 정산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(전담기관)	○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○ 지원사업(집중사업, 확산사업) 공모 및 협약 ○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 ○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○ 사업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
평가위원회	○ 세부사업계획 및 집중·확산사업 제안서 평가 ○ 사업 평가, 세부내용 검토, 우선순위 부여 등 평가
자문위원단	○ 제안된 사업에 대해 기술·법률·사업화 자문 추진 ○ 필요시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
시험인증기관	○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·기능성에 대한 검증 (KOLAS 성능시험이 가능한 기관)
수행기관 (주관·참여기업)	○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○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○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(필요시) ○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
주관기업	○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지원금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음
참여기업	○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
블록체인 기업	○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,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(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)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·참여기업으로 참여

II.

제안 안내

1. 접수 안내

- 접수기한 : 2023년 11월 2일, 14:00 (※제출기한 이후 사유불문 접수불가)
- 접수방법 : KISA 전자계약시스템(<https://cont.kisa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번호	제출서류	제출여부		비고	제출 시점
		주관	참여		
1	신청서 제출 공문 1부	필수	-	자체양식	공모 지원시 제출
2	신청서 1부	필수	-	[서식-1] 참조	
3	사업계획 요약서 1부	필수	-	[서식-2] 참조	
4	사업계획서 1부	필수	-	[서식-3], [서식-3-1] 참조	
5	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	필수	-	자체양식	
6	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	필수	-	[서식-4] 참조	
7	합의각서 1부	필수	-	[서식-5] 참조	
8	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6] 참조	
9	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약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8] 참조	
10	개인정보수집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10] 참조	
11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-11] 참조	
12	사용인감계 1부	필수	필수	[서식-12] 참조	
13	수요기관 참여의향서 1부	선택	선택	[서식-13] 참조	
14	블록체인 솔루션 납품 동의서	선택	선택	[서식-14] 참조	
15	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	필수	필수	[서식-17] 참조	
16	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	필수	-	[서식-18] 참조	
17	사업설명 자료(국민참여단 제출용)	필수	-	[서식-19] 참조	
18	국가 R&D성과 연계 기술 개요	선택	-	[서식-20] 참조	
19	법인인감증명 1부	필수	필수	-	
20	법인등기부등본 1부	필수	필수	1개월 이내 발급	
21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필수	필수	-	
22	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	선택	선택	해당 시 제출	
23	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	필수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	
24	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필수	필수	유효기간 내 서류	
25	현금출자(납입)확약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7] 참조	최종 협약시 제출
26	참여인력 참여확인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9] 참조	
27	보안서약서 1부	필수	필수	[서식15] 참조	
28	청렴이행각서(참여인력) 1부	필수	필수	[서식16] 참조	

※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10조(협약의 체결)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

- 접수 및 협약 관련 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 총무회계팀(061-820-1881)
- 사업내용 및 예산 작성, 평가 관련 문의처

- [집중·확산사업(자유)]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확산팀 박소현
선임연구원(bchain2024@kisa.or.kr)
- [확산사업(상호운용)]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정책팀 이강효
선임연구원(kanghyo.lee@kisa.or.kr)

2. 공동수급(컨소시엄) 관련

- 공동수급(컨소시엄) 구성 시 주관·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및 접수(필수)
 - ※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(<http://cont.kisa.or.kr>)에 **참여기업이 직접 제출**
 - ※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
 - ※ 확산(상호운용) 사업은 DID 1종, NFT 1종, 디지털지갑 1종을 개발해야하며, DID(기업 1곳), NFT(기업 1곳) **최소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구성**해야 함
(단, 계열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불인정함)
- 공동수급(컨소시엄)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,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
- 공동수급(컨소시엄)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, 공동계약운용
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는 별도 첨부
- 공동수급(컨소시엄)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, 주관기업은
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
-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(컨소시엄)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
- 사업관리자(PM)는 공동수급(컨소시엄) 주관기업 소속 임·직원으로서
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

3. 유의사항

☐ 접수 유의사항

-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접수는
온라인으로만 가능함

-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은 '별첨-공모서식' 등을 이용하여 작성
 -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
 - 별첨,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
-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
 - ※ '~를 제공할 수도 있다', '~이 가능하다', '~을 고려하고 있다'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
-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,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
-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'작성요령'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
-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,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한화(원)로 기재
- 발표평가 시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(PM)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, 발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수행기관 인력은 공동수급(권소사업)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
-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
- 전담기관(KISA)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
-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, 전담기관(KISA)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함

- 전담기관(KISA)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,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※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
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[서식-3], [서식3-1]에 작성한 내용,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, 전담기관(KISA)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
□ 보안준수

- 수행기관은 전담기관(KISA)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
-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, 전담기관(KISA)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,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,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,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게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

< 보안준수 위반 사례 >

- 참여기업이 사업전담기관·주관기업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
-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전담기관·주관기업에 사전 승인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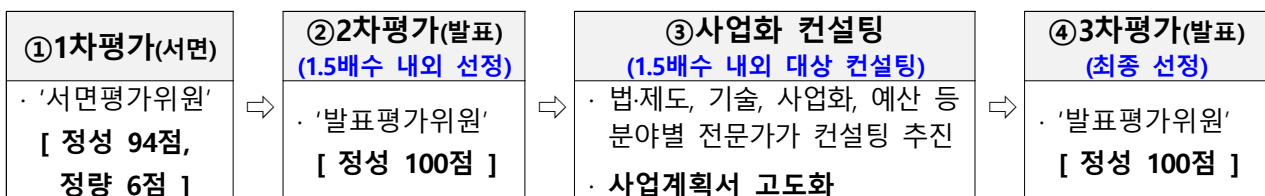
Ⅲ.

사업 선정방안

1. 평가 공통사항 (서면·발표평가 공통사항)

-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,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
 -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
-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
-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3차평가(발표) 평가표의 '평가 구분' 순서 (①→②→③→④)로 점수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인정
-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
 - ※ 최종 지원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며,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(협상 대상자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선정)

2. '집중·확산(자유)' 선정 평가



구분	주요내용	비고
(1단계:1차평가) 서면평가	○ 제안사업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 여부 ○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 등	서면평가위원회
(2단계:2차평가) 발표평가	○ 구현가능성, 1차평가 후 개선노력, 서비스 지속가능성, 서비스의 사회적가치 등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설명	발표평가위원회
(3단계:컨설팅) 자문단 컨설팅	○ 2차평가를 통과한 사업(1.5배수 내외)에 대해 법·기술·사업화·예산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 ※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(미반영 시 사유제출)	전담기관(KISA), 자문단, 사업자
(4단계:3차평가) 발표평가	○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로 최종 발표평가 ○ 사업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파급력 및 개선노력 등	발표평가위원회

○ (1단계) 1차평가 (서면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(“집중”은 3배수 이하, “확산”은 2배수 이하 선정)

※ 1차평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2차평가지 별도제출
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외부전문가(100%)
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정량 점수* 등

< *정량 점수 >

- (+최대 3점) 국민참여단(‘블록체인 누리단’, ‘혁신참여단’ 등)의 선호도 투표 점수
 ※ (국민참여단) 지원한 사업 중 선호하는 사업에 투표 → (KISA) 득표수 순으로 ‘상위 20% 미만(3점), ‘20% 이상 50% 미만(2점), ‘50% 이상(1점) 총 3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으로 점수 부여
 ※ 국민참여단 투표시 지원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(공모서식-19)를 참고하여 투표
- (+1점)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 시 점수 부여 (참여 기업 수와 상관없이 1점)
- (+1점)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시 점수 부여 (중소기업 참여 개수와 상관없이 1점)
- (+1점) 국가 R&D성과를 연계한 기술·서비스인 경우 (증빙자료[공모서식-20] 제출 필요)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사업의 적절성 (3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○ 사업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목표의 타당성 (예:AS-IS, TO-BE 명확성 등)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30점
실현 가능성 (30점)	사업 수행의지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	○ 사업 제안기업의 수행 능력 및 의지 (예 : 서비스 실수요자 확보 노력 등) ○ 참여기관 구성의 적정성 (필요한 기관기업으로 구성여부, 역할분담 등) ○ 블록체인 서비스 구성의 적합성 (블록체인 참여기업 데이터 등)	30점
사업의 효과성 (24점)	성과지표 타당성 및 목표의 구체성	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 등) ○ 단기, 중기, 장기 목표의 구체성	24점
파급력 (10점)	대국민 이용 가능성	○ 대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여부	10점
정량 점수 (6점)	국민 선호도(3점)	○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점수	6점
	컨소시엄(1점)	○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	
	중소기업(1점)	○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	
	국가R&D성과연계(1점)	○ 국가 R&D성과를 연계한 기술·서비스인 경우 ※ 증빙서류를 제출했어도, 신청서·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 미기재시 제외	
총계			100점

○ (2단계) 2차평가 (발표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(1.5배수 내외로 선정)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외부전문가(100%)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파급력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사업의 적절성 (1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○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10점
	사업 수행의지	○ 사업 제안기업의 수행 역량 및 의지 ○ 사업 기간내 개발, 실증기간의 적절성	20점
실현 가능성 (30점)	평가 후 개선노력	○ 서면평가 평가의견 반영노력 및 답변서의 구체성	10점
	성과지표 타당성	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, 도적인 지표인지 등)	10점
사업의 효과성 (30점)	블록체인 활용 효과	○ 블록체인 기술 적용 효과 - 편의성, 업무절차 간소화, 비용절감 등 효과 ○ 대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여부	20점
	사회적가치	○ 서비스의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(예 : 상생협력, 친환경, 지역연계 등)	10점
사업의 파급력 (30점)	미래 성장 가능성	○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사업연계 및 확장성(향후 확대 가능성)	20점
총계			100점

○ (3단계) 사업화 컨설팅

- 대상 : 2차평가(발표)를 통과한 사업
 - 내용 : 컨설팅(법·기술·사업화·예산)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
 - 방식 : 동일한 자문단이 컨설팅 진행
- ※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는 KISA에 제출(제출된 파일로 3차평가 진행)

○ (4단계) 3차평가 (발표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(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로 평가)
- (평가위원) 2차평가(발표)와 동일한 평가위원으로 구성
※ 단,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의 40%이내에서 변경 가능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효과성, 파급력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①사업의 적절성 (1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○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10점
	구현가능성	○ 사업 기간내 개발, 실증기간의 적절성	10점
②실현 가능성 (30점)	컨설팅 후 개선노력	○ 사업화 컨설팅 후 개선사항 반영 노력	20점
	성과지표 타당성	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, 도적인 지표인지 등)	10점
③사업의 효과성 (30점)	블록체인 활용 효과	○ 블록체인 기술 적용 효과 - 편의성, 업무절차 간소화, 비용절감 등 효과 ○ 대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여부	20점
	서비스의 사회적가치	○ 서비스의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(예 : 상생협력, 친환경, 지역연계 등)	10점
④사업의 파급력 (30점)	미래 성장 가능성	○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사업연계 및 확장성(향후 확대 가능성)	20점
총계			100점

3. '확산(상호운용)' 선정 평가

①1차평가(서면) (3배수 선정)	⇒	②2차평가(발표) (2배수 선정)	⇒	③사업화 컨설팅 (2배수 대상 컨설팅)	⇒	④3차평가(발표) (최종 선정)
· '서면평가위원' [정성 100점]		· '발표평가위원' [정성 100점]		· 법·제도, 기술, 사업화, 예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컨설팅 추진 · 사업계획서 고도화		· '발표평가위원' [정성 100점]

구분	주요내용	비고
(1단계:1차평가) 서면평가	- 제안사업자가 상호운용 과제 수행 가능 여부 -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	서면평가 위원회
(2단계:2차평가) 발표평가	실현가능성, 1차평가 후 개선노력, 서비스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설명	발표평가 위원회
(3단계:컨설팅) 자문단 컨설팅	2차평가를 통과한 사업(2배수 내외)에 대해 법·기술·사업화·예산 컨설팅 후 사업계획서 수정 ※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(미반영 시 사유제출)	전담기관(KISA), 자문단, 사업자
(4단계:3차평가) 발표평가	-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로 최종 발표평가 -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	발표평가 위원회

○ (1단계) 1차평가 (서면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(3배수 이하 선정)

※ 1차평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2차평가지 별도제출
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외부전문가(100%)
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사업의 적절성 (3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- 사업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- 사업목표의 타당성 (예:AS-IS, TO-BE 명확성 등) -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30점
실현 가능성 (30점)	사업 수행의지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	- 참여기관 구성의 적절성 및 과제수행 가능여부 (필요한 기관·기업으로 구성여부, 역할분담 등) - 공동플랫폼(DID, NFT), 디지털 지갑 개발 계획의 타당성	30점
지속 가능성 (30점)	지속운영 타당성 및 목표의 구체성	- 공동플랫폼 구축 및 향후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운영방안의 타당성 '25년 신규 공동플랫폼 및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방안	30점
신뢰성 (10점)	서비스 안정성 확보방안의 타당성	SW시험인증체계 신청·대응 계획의 타당성 (예 : ISMS-P, 클라우드 인증 등)	10점
총계			100점

○ (2단계) 2차평가 (발표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(2배수 내외로 선정)
- (평가위원) 블록체인 외부전문가(100%)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사업의 적절성 (1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○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10점
실현 가능성 (30점)	사업 수행의지	○ 사업 제안기업의 수행 역량 및 의지 ○ 사업 기간내 개발, 실증기간의 적절성	10점
	구현 가능성	○ 공동플랫폼(DID, NFT), 디지털 지갑 개발 계획의 타당성	10점
	평가 후 개선노력	○ 서면평가 평가의견 반영노력 및 답변서의 구체성	10점
지속 가능성 (30점)	성과지표 타당성	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, 도적인 지표인지 등)	10점
	지속운영 타당성	○ 공동플랫폼 신규 등장에 따른 서비스 연계방안의 타당성 ○ 공동플랫폼 구축 후 지속 운영방안 타당성 ○ '25년 공공서비스 연계·개발 시 지원방안 ○ '25년 신규 구축된 공동플랫폼 연계방안	20점
플랫폼 신뢰성 (30점)	서비스 안전성	○ SW시험인증체계 신청·대응 계획의 타당성 (예 : ISMS-P, 클라우드 인증 등)	15점
	확장 가능성	○ 서비스 개발·운영 등 이용 및 확장 편의성	15점
총계			100점

○ (3단계) 사업화 컨설팅

- 대상 : 2차평가(발표)를 통과한 사업
- 내용 : 컨설팅(법·기술·사업화·예산)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
- 방식 : 동일한 자문단이 컨설팅 진행

※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는 KISA에 제출(제출된 파일로 3차평가 진행)

○ (4단계) 3차평가 (발표)

- (평가방법)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(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·발표자료로 평가)
- (평가위원) 2차평가(발표)와 동일한 평가위원으로 구성
※ 단,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의 40%이내에서 변경 가능
- (평가기준) 사업의 적절성, 실현가능성, 지속가능성, 신뢰성 등

평가 구분	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①사업의 적절성 (10점)	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	○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○ 사업 추진 시급성, 지원 타당성	10점
②실현 가능성 (30점)	사업 수행의지	○ 사업 제안기업의 수행 역량 및 의지 ○ 사업 기간내 개발, 실증기간의 적절성	10점
	구현 가능성	○ 사업 기간내 (DID, NFT)공동플랫폼 개발의 적절성 ○ 디지털 지갑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	10점
	컨설팅 후 개선노력	○ 사업화 컨설팅 후 개선사항 반영 노력	10점
③지속 가능성 (30점)	성과지표 타당성	○ 서비스 성과지표의 타당성 (예 : 서비스 목표에 맞는 지표인지, 도적인 지표인지 등)	10점
	지속운영 타당성	○ 공동플랫폼 신규 등장에 따른 서비스 연계방안의 타당성 ○ 공동플랫폼 구축 후 지속 운영방안 타당성 ○ '25년 공공서비스 연계·개발 시 지원방안 ○ '25년 신규 구축된 공동플랫폼 연계방안	20점
④플랫폼 신뢰성 (30점)	서비스 안전성	○ SW시험인증체계 신청·대응 계획의 타당성 (예 : ISMS-P, 클라우드 인증 등)	10점
	확장 가능성	○ 서비스 개발·운영 등 이용 및 확장 편의성	20점
총계			100점

IV.

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

1. 협약 안내

-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(KISA)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-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(KISA)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,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
- 기술협상 후 완료된 문서(사업계획서, 협약서 등)에 대해 오프라인 서명이 아닌 'KISA 계약관리시스템'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-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70%를 지급하며, 수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(100%)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
-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'발표평가위원회'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
- 협약체결 이후 제안사업이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

2. 사업 추진

□ 진도관리 및 보고

-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·월간보고로 진행
 -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회계사·전담기관에 통보
-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방문 실사 요구시에 응해야 하며(2회 이상) 착수보고, 중간·최종발표, 수시보고 실시
-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품질관리조직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해야 함

□ 사업비 집행

- 사업비 집행은 지정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, 각 사업 회계담당자는 회계·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함
- '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'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,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
- “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”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(간접비는 편성 불가)
 -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거래 불가
 - ※ “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”의 별표3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
 -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,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
○ 필수 공통비용 (예산서 반영 필수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구분	집중사업	확산사업	비고
일반수용비	①홍보비	-	-	수행기관이 홍보를 직접 수행
	회계감사 (주관기업 필수책정)	3	2	KISA가 감사 용역사 선정
②일반연구비	SW시험인증용역	30	20	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
	회계컨설팅 (주관기업 필수책정)	12	9	KISA가 컨설팅 용역사 선정
	개인정보 컨설팅	-	-	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
	사업 품질관리조직 운영	50	50	KISA가 수행 용역사 선정
	앱·웹 보안취약점 점검	-	-	수행기관이 수행 용역사 선정
③일반용역비	블록체인 누리단 (국민참여단)	11	11	KISA가 수행 용역사 선정
	진흥주간 전시 (주관기업 필수책정)	40	20	KISA가 행사 용역사 선정
총계		146	112	-

- (①홍보비) 수행기업은 본 사업으로 개발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온·오프라인 홍보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(예산편성 필수)

- (일반수용비) 수행기관이 직접 홍보를 수행할 경우
- (일반용역비) 홍보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할 경우

- (②일반연구비) 지식기반 업무 용역비(예, 법률 및 특허, 소프트웨어 개발 등)로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(단, 동일용역은 한 시업자 예산에 편성)

- ‘개인정보 컨설팅’, ‘앱·웹 보안취약점 점검’은 필수 추진 항목이며, 컨소시엄에서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

※ 확산사업(상호운용)은 인증비용(ISMS-P, 클라우드 인증 등) 필수 책정

- (③일반용역비)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대행 용역비(홍보 대행 등)로 컨소시엄 내에서 협의하여 부담(단, 동일용역은 한 시업자 예산에 편성)
※ 확산사업(상호운용)의 경우, '블록체인 누리단 비용'은 책정 제외
-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, 협약시 제출한 구매요청서에 한하여 전담기관(KISA) 승인 후 구매 가능
-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, 기자재 임차 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 사유서에 임차 사유 등(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)을 명시하여 사전 제출해야 함

□ 사업 계획의 변경

-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(KISA) 사업담당 부서에 서면(공문)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
 -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2023-226호, 2023. 1. 19)에 따름
- 승인·통보사항은 회계사 검토 후 전담기관(KISA)에 전자공문 발송
- 승인사항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

< 승인 사항 >	
1.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	
2. 최종 목표의 변경	
3.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	
4. 기금사업비의 운영비, 연구용역비의 20% 이상 증액	
5.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	
6.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	
7. 비목 중 인건비, 여비의 세목간 변경	
8. 취득가액 3천만원(부가가치세 포함 금액)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	

3. 사업 평가

□ 중간평가

- 선정평가 때 참여한 ‘발표평가위원회’가 중간평가 실시
- 기술 개발·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,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 - ※ 자문·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
-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(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)

구분	평가항목 및 기준	배점
목표의 달성	○ 계획된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이 적절하고 사업목적 및 목표에 맞게 추진 되었는가	25점
과정의 적정성	○ 상반기 추진된 사업·홍보 부문 산출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정한가	30점
	○ 상반기 추진된 개발 부문 산출물이 충실하고 계획 대비 적정한가	20점
지적사항 이행	○ 평가의견, 품질관리 등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적절히 하였는가 ○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저해요인 등을 적절히 조치하였는가	25점
총계		100점

※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최종(완료)평가

- '발표평가위원회'가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산출물(최종 결과보고서 등) 등을 활용해 최종평가 실시

※ 세부 평가방법/절차,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전담기관(KISA)이 별도로 정함

- 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

구분	평가항목 및 기준	점수
목표의 달성도	○ 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충실성 여부	20점
과정의 적정성	○ 사업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일정준수 등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○ 사업추진방식 개선, 비용절감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여부	20점
결과의 질적수준	○ 사업추진 산출물 등의 완성도 및 활용성 여부	20점
성과의 활용도	○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○ 정보통신산업 및 국가경제·사회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	20점
지적사항 이행정도	○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○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	20점
총계		100점

※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

□ 회계 정산 절차

- 수행기관은 전담기관(KISA)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,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·방법 등 협의
 - 수행기관은 전담기관(KISA)에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·통보시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함
 - 수행기관은 전담기관(KISA)이 요청하는 일시에 회계감사 비용을 회계법인 등에 일괄 지급해야 하며,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에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('필수공통비용'(18P) 참고)
-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*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
 - *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, 근거서류(영수증, 계좌 거래내역 등),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
-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·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
-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전담기관(KISA)에 제출
 - ※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제출(USB 등)
-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전담기관(KISA)에 송금
 - ※ 정산내역 엑셀 파일을 e-mail로 별도 전송(최종 반납금 반납 계좌는 추후 공지)
-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-mail로 전송
 - 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1호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에 의거,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,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'25.2월 중순까지 반납

- 전담기관(KISA)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(필요시 실사),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
-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
 - 총 사업비(지원금 + 민간부담금) 집행 잔액, 지원금 발생이자, 회계 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
 - ※ 단, 총 사업비(지원금+민간부담금) 정산 결과,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

□ 소프트웨어 부문

-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시험인증기관*에 블록체인 성능 관련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서 획득 및 제출
 - * 시험인증기관 : KOLAS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 인정 획득 기관
- 수행기관은 기능 요구사항 관련 시험항목 선정을 위해 시험인증 기업과 상호 협의 가능
-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시험인증기업과 시험 항목 협의 및 계약 완료
- 수행기관은 시험인증기업이 시험 수행 시 필요한 시험환경(H/W, S/W), 시험도구 및 시험지원 인력 제공
- 사업의 결과물인 서비스 및 제품의 기능성·신뢰성 검증을 위한 결과보고서 제출(완료보고서 제출 시)
 - 모바일 앱·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

-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
(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)
 - 스마트컨트랙트 감사 결과보고서
- 블록체인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(블록체인 탐색기, 대시보드 등)을 제안하고 개발 및 공개해야 함
- ※ 전담기관(KISA)에 블록체인 관리 및 모니터링 접근권한을 제공해야 함
(개발 중·개발 완료된 서비스의 관리자 권한을 전담기관(KISA)에 부여)
- 확산사업(상호운용)의 경우, 플랫폼의 기술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사업기간 내에 지원한 SW시험인증 관련 자료*를 일체 제출해야 함
- * ISMS-P, 클라우드 인증 등 신청서, 추진내역 등 일체

☐ 최종보고서 제출

-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, 최종 정산보고서(SW시험인증 보고서, 회계감사보고서, 컨설팅 결과보고서 포함)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
- ※ 제출서류(KISA가 요구한 산출물 목록에 맞춰 USB 등으로 제출)
- 1) 협약서 1부,
 - 2) 최종 사업계획서 1부
 - 3) 최종 결과보고서 1부,
 - 4) 최종 정산보고서 1부
 - 5) 정산 근거서류 등 일체,
 - 6) SW개발 산출물 일체* 1식

산출물 목록(예시)	
요구사항정의서	테이블정의서
기능차트	프로그램 목록
프로세스 정의서	개발표준정의서
인터페이스 정의서	테스트시나리오
UI설계서	단위테스트 결과서
ERD	소스코드
테이블목록	SW시험 인증 관련 자료(상호운용)

5. 기타 안내 사항

- 사업별 국내·외 시장현황, 국내·외 법/제도·정책현황, 국내·외 표준·기술개발 현황을 전담기관(KISA)에서 요청 시 제출
- PM은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, 정기·비정기 회의, 각종 발표에서 직접 발표할 것
-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수행기관이 소유함
 - 서비스·제품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임을 밝혀야 함
 - 공동수급(컨소시엄) 내에서 수익금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본 사업에 지원해야 함
 - 단, 전담기관(KISA) 또는 총괄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
 - 전담기관(KISA), 총괄기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이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·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본 사업의 개발기간(시범운영 포함) 동안 개발·구매한 유·무형자산(하드웨어, 상용 소프트웨어 등)은 수행기관이 소유함
 - 수행기관은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-226호, 2023. 1. 19)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함
 -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유·무형 자산은 협약종료 후 5년(2029. 2월)까지 전담기관(KISA)에게 연2회 현황보고, 자료를 제출해야 함

- 사업수행시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
- 전담기관(KISA)은 수행기관에 기술 요구사항, 개발현황 등의 기술·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사업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
 -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
 - 전담기관(KISA)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,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자료요청 및 실사 가능
 - 전담기관(KISA)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여야 함
- ※ 전담기관(KISA)이 '적정성 검증 TF'(단독 또는 외부전문가)를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요구시,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함
- 사업 관련 언론보도·홍보는 전담기관(KISA)와 사전협의 후 진행
 - ※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,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
- 모든 구매·용역(수의계약 포함)은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